## 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051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"(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)"을 "(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후계수산업경영인"을 "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"으로, "수립하고"를 "수립하여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)	제16조(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
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	<u> 수산인의 육성)</u>
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	
위하여 <u>후계수산업경영인</u> 의 육	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
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<u>수</u>	<u> 수산인 수</u>
<u>립하고</u> 시행하여야 한다.	립하여